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824호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,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21조”를 “「주택법」 제35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주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16조”를 “주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15조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법 제21조의4제2항”을 “법 제4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2014년 1월 1일”을 “201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주택법」 제21조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,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,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「주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(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,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)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(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)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24조(인정의 취소) ① 인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하며, 인정이 취소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택법」 제3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「주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 제1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4조(인정의 취소) ① ----- ----- 법 제41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.

② (생략)

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 2017년 1월 1일-----

-----.